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2020. 04.

환 경 부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배출사업자의 자가측정 대비 부족한 측정 인력을 보충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측정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3.7)의 시행일 도래('20.7)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를 의무고용하는 시험·검사기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 실태' 감사원 감사 실시('19.4)

2. 주요내용

가. 정도검사 및 측정기록부 등 행정서비스에 온라인·전자문서를 활용
(안 제13조, 제17조)

※ 국조실 온라인 규제 정비 과제('18.5.24)

나. 대기·수질 분야 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검사기관을 규정
(안 제17조의4제3항, 별표 11의3 신설)

다. 개정안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재검토기한* 명시(안 제31조제6호)

*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라.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 개편(안 별표9)

현장의 여건에 맞게 관련 학과 졸업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 개편

※ 업계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인력기준 개편 요구

마. (시행일) 법 시행 예정일('20.7.17)과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부령 제 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및 나목 중 “포름알데히드”를 각각 “폼알데하이드”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성적서에”를 “성적서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기록하고”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로 한다.

제17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이란 별표 11의3과 같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7조의4제3항 및 별표 11의3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확보 시험·검사기관: 2020년 1월 1일

별표 9 제1호 중 기술능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1명
- 2) 대기환경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 3) 화학분석기능사·환경기능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 계열(환경공학 등)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1명 이상
- 4) 대기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별표 9 제2호 중 기술능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수질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1명
- 2) 수질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 3) 화학분석기능사·환경기능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 계열(환경공학 등)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1명 이상
- 4)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 생태독성물질에 대한 시험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1명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 생태독성 물질에 대한 시험 경력 1년 이상인 자 1명(생태독성물질 시험으로 한정한다)
- 5) 수질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별표 9 제3호 중 기술능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소음진동기사 또는 소음진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 2) 화학분석기능사·환경기능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 계열(환경공학 등)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1명 이상

별표 9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실내공기질 분야

기 술 능 력	시 설 및 장 비
1)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산업 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1명 2) 대기환경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화공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중 1명 이상 3) 화학분석기능사·환경기능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 계열(환경공학 등)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1명 이상 4) 실내공기질 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1) 실험실 2) 다음 항목을 실내공기질 분야 공정시험기준 중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시험방법에서 주 시험 방법으로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가) 미세먼지(PM10) 나) 이산화탄소(CO ₂) 다) 폼알데하이드(HCHO) 라) 총부유세균 마) 일산화탄소(CO) 바) 이산화질소(NO ₂) 사) 라돈(Rn) 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자) 석면 차) 초미세먼지(PM-2.5) 카) 곰팡이 타) 오존(O ₃)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에서의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시료 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

별표 9 제5호 중 기술능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1명
- 2) 대기환경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 3) 화학분석기능사·환경기능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 계열(환경공학 등)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1명 이상
- 4) 악취 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별표 9 비고 제2호,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비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위 표 제1호 기술능력란의 1) 또는 2), 제2호 기술능력란의 1) 또는 2), 제3호 기술능력란의 1), 제4호 기술능력란의 1) 또는 2), 제5호 기술능력란의 1) 또는 2)의 인력이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 기술능력란의 3), 제2호 기술능력란의 3), 제3호 기술능력란의 2), 제4호 기술능력란의 3), 제5호 기술능력란의 3)의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1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의3]

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하여야 하는 시험·검사기관(제17조의4제3항 관련)

1. 대기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검사기관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나. 「실내공기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기관

다.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라.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측정기기를 갖추어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는 자

2. 수질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하여야 하는 시험·검사기관

가.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기관

나.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측정기기를 갖추어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1호 기술능력란의 1), 제2호 기술능력란의 1), 제4호 기술능력란의 1), 제5호 기술능력란의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능력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9 제1호 기술능력란의 2), 제2호 기술능력란의 3), 제3호 기술능력란의 2), 제4호 기술능력란의 2), 제5호 기술능력란의 2)의 인력에 대해서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 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측정기 기를 말한다. 1. ~ 6. (생략) 7. 실내공기질 분야 가. 실내공간 오염물질(<u>포름 알데히드 · 미세먼지 · 휘 발성유기화합물 · 석면 · 총부유세균만</u> 해당한다)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 기 나. 실내공간 오염물질(<u>포름 알데히드 · 미세먼지 · 일 산화탄소 · 이산화탄소 · 오존 · 이산화질소 · 라돈</u> 만 해당한다) 자동측정기 와 그 부속기기	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가. ----- <u>폼알 데하이드</u> ----- ----- ----- ----- - 나. ----- <u>폼알 데하이드</u> ----- ----- ----- ----- -----
제13조(검사기록의 보존) 검사기 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정도검 사나 검정의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나 별지 제11호서식의 <u>성적서에</u> 기록하	제13조(검사기록의 보존) ----- ----- ----- ----- ----- ----- <u>성적서에 서면 또</u>

고, 그 결과를 2년 동안 보관하 여야 한다. 다만, 정도검사주기 가 2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기 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는 <u>전자적 방법으로</u> ----- ----- ----- -----.
제17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①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제 1항에 따라 측정분석 결과를 해 당 분야별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측정기록부에 <u>기록하고</u> , 그 결 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① ----- ----- ----- ----- <u>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u>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4(정도관리의 재신청 등) ① · ② (생략) <u><신 설></u>	제17조의4(정도관리의 재신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8조의2제6항에서 “ <u>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 관</u> ”이란 별표 11의3과 같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 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 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 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u>하여야</u> 한다. 1. ~ 5. (생략) <u><신 설></u>	제31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u>해야</u>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7조의4제3항 및 별표 11

6. (생 략)	의3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확보 시험·검사기관: 2020년 1 월 1일 7. (현행 제6호와 같음)
----------	--

별지 [별표 9]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 (제14조제1항 관련)

1. 대기 분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분야 측정 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1명 2) 대기환경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3) 화학분석기능사·환경기능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 계열(환경공학 등)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1명 이상 4) 대기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1) 실험실 2) 다음 항목을 대기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가) 기본항목 (1) 황산화물(SO ₂) (2) 암모니아 (3) 이황화탄소 (4) 황화수소 (5) 먼지 (6) 매연 (7) 일산화탄소 (8) 질소산화물 나) 선택항목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1호의 대기 분야 환경기준 항목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측정하려는 항목(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에 그 시험방법이 규정된 항목만 해당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3)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

2. 수질 분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수질분야 측정 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1명 2) 수질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3) 화학분석기능사·환경기능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 계열(환경	1) 실험실 2) 다음 항목을 수질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와 실험기기 가) 기본항목(생태독성물질 시험만 하는 경우에는 (2)와 (3)은 적용하지 않는다) (1) 수소이온농도(pH)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및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3) 부유물질(SS) 나) 선택항목

공학 등)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1명 이상 4)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 생태독성물질에 대한 시험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1명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 생태독성물질에 대한 시험 경력 1년 이상인 자 1명(생태독성물질 시험으로 한정한다) 5) 수질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분야 환경기준 항목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에 그 시험방법이 규정된 항목만 해당한다) 3)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
---	---

상 3) 화학분석기능사·환경기능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 계열(환경공학 등)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1명 이상 4) 실내공기질 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자) 석면 차) 초미세먼지(PM-2.5) 카) 곰팡이 타) 오존(O₃)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에서의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
---	---

3. 소음·진동 분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소음진동기사 또는 소음진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2) 화학분석기능사·환경기능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 계열(환경공학 등)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소음·진동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의 장비. 다만, 진동 분야의 장비는 진동을 측정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소음계와 진동레벨계 나) 소음도기록계 및 진동레벨 기록계 다) 소음계 외부조정기 2) 측정업무용 차량 1대

4. 실내공기질 분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분야 측정분석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1명 2) 대기환경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화공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중 1명 이상	1) 실험실 2) 다음 항목을 실내공기질 분야 공정시험기준 중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시험방법에서 주 시험방법으로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시험기기 가) 미세먼지(PM10) 나) 이산화탄소(CO₂) 다) 포알데하이드(HCHO) 라) 총부유세균 마) 일산화탄소(CO) 바) 이산화질소(NO₂) 사) 라돈(Rn)

5. 악취 분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1명 2) 대기환경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3) 화학분석기능사·환경기능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 계열(환경공학 등)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1명 이상 4) 악취 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1) 실험실 가) 공기희석관능 실험실 나) 지정악취물질 실험실(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다음 항목을 악취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시험기기 가) 복합악취 (1) 무취공기 제조장치 1식 (2) 악취희석장치 1식 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지정악취물질 중 측정하려는 항목 3)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

비고

1.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삭제
3. 삭제
4. 기술능력 중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대기 분야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또는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수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수질분야 측정대행업의 경우 생태독성물질 시험에 관한 기술능력을 갖춘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수질환경기사를 확보한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시설 및 장비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대기환경보전법」

다. 「먹는물관리법」

라. 「소음·진동관리법」

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바. 「화학물질관리법」

사. 「폐기물관리법」

아. 「하수도법」

자.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카. 「토양환경보전법」

6. 위 표 제1호 기술능력란의 1) 또는 2), 제2호 기술능력란의 1) 또는 2), 제3호 기술능력란의 1), 제4호 기술능력란의 1) 또는 2), 제5호 기술능력란의 1) 또는 2)의 인력이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 기술능력란의 3), 제2호 기술능력란의 3), 제3호 기술능력란의 2), 제4호 기술능력란의 3), 제5호 기술능력란의 3)의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7. 삭제

별지 [별표 11의3]

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하여야 하는 시험·검사기관 (제17조의4제3항 관련)

1. 대기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검사기관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나. 「실내공기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기관

다.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라.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측정기기를 갖추어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는 자

2. 수질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하여야 하는 시험·검사기관

가.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기관

나.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측정기기를 갖추어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는 자